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900
------	------

2024. 06. 26.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0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05월 3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6.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가. 제안이유

- 대학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기존 사회복지관 업무를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서 수행

나. 국제교육원 폐지(안 제7조제1항제9호 삭제) 후 국제처 신설

- 부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을 대학본부 산하 하부조직인 국제처로 확대개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국제처

다. 교육혁신원 신설(안 제7조제1항제9호)

- 기존 자유융합대학, 미래혁신원에서 수행하던 교양교육, 글로벌외국어교육, 교수학습개발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라. 미래혁신원(안 제7조의2) 폐지 후 관련 업무 기획처로 이관

- 대학의 기획·평가·대학혁신·성과관리 기능 일원화로 대학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강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기획처

### Ⅲ. 검토의견 요약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획·평가, 교류·협력 등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의 조직·기구를 효율적인 체계로 개편하고자 제출됨.

#### 나. 서울시립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

- 서울시립대의 조직 개편안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제고, 효율적이고 응집력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등 실질적인 대학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동 조직 개편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개정 사항으로  
▶[부속기관] 사회복지관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 ▶[부속기관] 국제교육원 폐지, ▶[부속기관] 교육혁신원 신설, ▶[직속기관] 미래혁신원 폐지 사항을 반영함.
- 규칙 및 학칙 등 개정 사항으로는 ▶대학본부 기획처의 확대·개편(업무 조정 및 팀 확대, 대외협력과 신설), ▶대학본부 내 국제처 신설, ▶대학본부 학생처 개편(학생심리상담 기능 및 현장실습센터 이관, 인재개발실 신설 등), ▶[부속기관] 창업지원단 확대·개편(부단장 및 창업기획팀 신설), ▶[부설연구

기관] 서울디자인연구소 신설 등을 반영함.

< 개편 전후 대학 조직·기구 편제 >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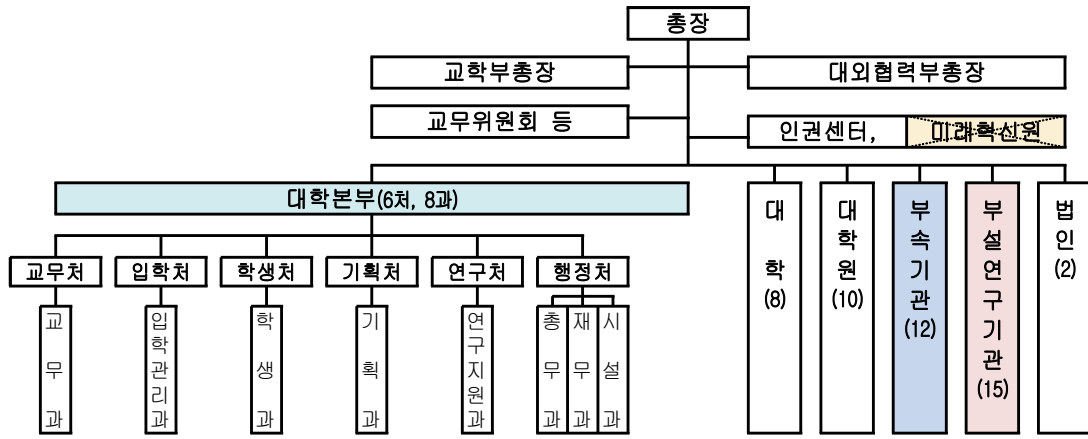
- ◆ 1총장, 2보좌기관(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2직속기관(인권센터, 미래혁신원)
- ◆ 대학본부(6처 8과), 대학(8), 대학원(10)
- ◆ 부속기관(12), 부설연구기관(15), 법인기관(2)

<개편안>

- ◆ 1총장, 2보좌기관(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1직속기관(인권센터)  
→ 직속기관 : ‘미래혁신원’ 폐지(대학본부 ‘기획처’, 교육혁신원(신설), 학생처로 기능 이관)
- ◆ 대학본부(7처 10과), 대학(8), 대학원(10)  
→ 대학본부 : ‘기획처’ 확대 개편(2과 체제), ‘학생처’ 확대 개편(1과, 1실, 2센터), ‘국제처’ 신설(1과, 1센터)
- ◆ 부속기관(12), 부설연구기관(16), 법인기관(2)  
→ 부속기관 : ‘국제교육원’ 폐지(‘국제처’로 기능 이관), ‘사회복지관’ 폐지(‘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으로 기능 이관), ‘교육혁신원’ 신설,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  
→ 부설연구기관 : ‘서울디자인연구소’ 신설

**< 현 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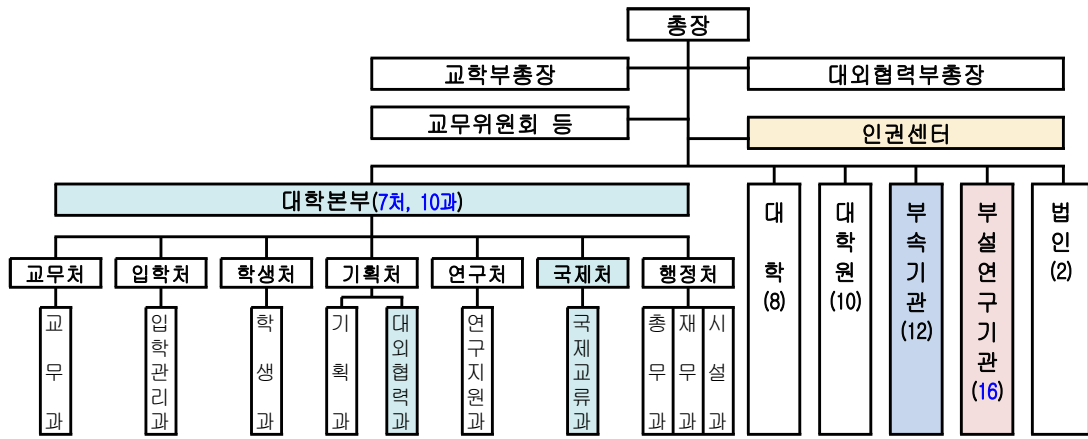
◆ 조직·기구 : 직속(2), 대학본부(6처, 8과), 대학(8), 대학원(10), 부속기관(12), 부설연구기관(15), 법인(2)



직속(2)	인권센터	<del>미래혁신원</del>							
대학(8)	정경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도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자유융합대학	
대학원(10)	일반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부속기관(12)	중앙도서관(사서과), 출판부,	박물관, 생활관,	전산정보원(전산정보과), 평생교육원,	대학보건소, 창업지원단	<del>국제교육원(국제교과),</del> <del>사회복지관</del>	대학언론사,	체육관(월스센터),		
부설연구기관(15)	도시과학연구원, 자연과학연구소	공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도시공학부데이터연구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양자정보리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서울대자연연구소	
법인(2)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 개편 후 >**

◆ 조직·기구 : 직속(1), 대학본부(7처, 10과), 대학(8), 대학원(10), 부속기관(12), 부설연구기관(16), 법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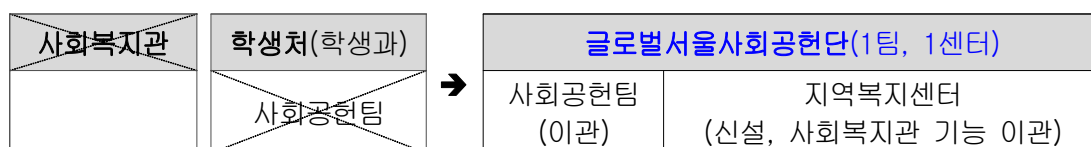
직속(1)	인권센터								
대학(8)	정경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도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자유융합대학	
대학원(10)	일반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부속기관(12)	중앙도서관(사서과), 출판부,	박물관, 생활관,	전산정보원(전산정보과), 평생교육원,	대학보건소, 창업지원단	대학언론사,	체육관(월스센터),	출판부,	생활관,	
부설연구기관(16)	도시과학연구원, 자연과학연구소	공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도시공학부데이터연구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양자정보리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서울대자연연구소	
법인(2)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 다. 개정안의 세부 검토

### (1) 사회복지관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학생 중심에서 교수·직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서울시립대의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부속기관인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조례 개정 사항).
-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규칙<sup>1)</sup> 또는 학칙·규정 개정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회복지관 및 학생처(학생과)의 사회공헌팀을 폐지하여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내 사회공헌팀과 지역복지센터로 기능을 이관함.

#### <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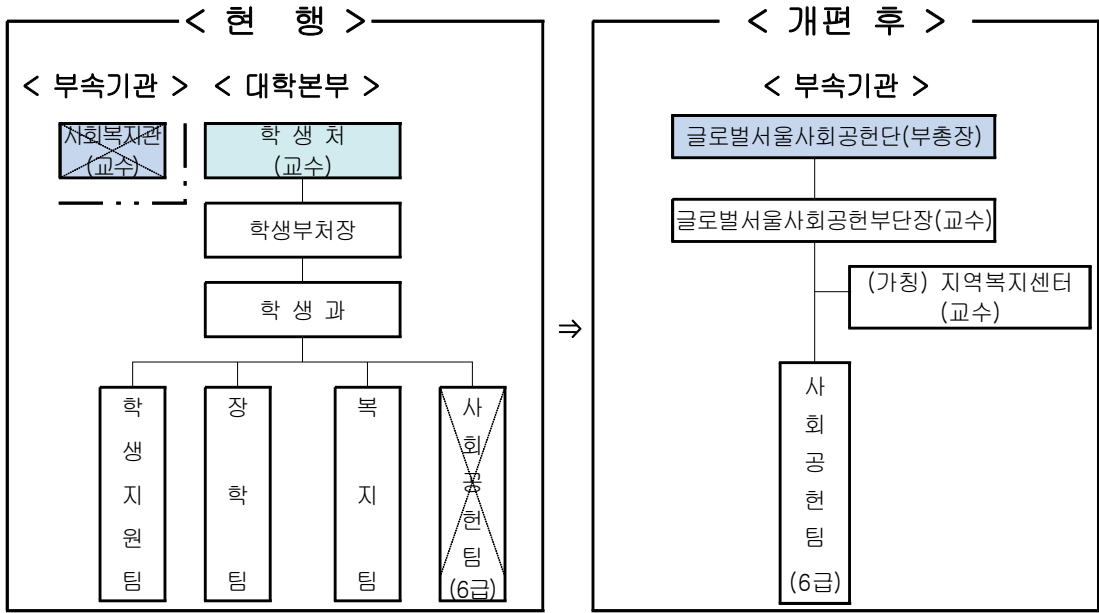


-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의 단장은 대외협력부총장이 겸보하고, 실무총괄을 위하여 부단장(신설)을 신설하며, 지역복지센터장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겸보함.

-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의 사회공헌팀에는 4명의 기존 인력<sup>2)</sup>이 그대로 배치될 예정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하 동일함.

2) 정규직: 팀장 1, 무기계약 1, 공무원 1 / 비정규직: 기타(사업비 채용) 1



- 기존 학생처(학과)의 사회공헌팀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해외 봉사활동 지원, ▶지역사회 연계 및 전공 연계 사회공헌, 사회봉사 활동 운영 등을 담당하였는바,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동 기능을 흡수·이관하여 사회공헌 방향 수립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총괄·핵심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공헌팀 개편 전후 업무분장 비교 >**

학생처 사회공헌팀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사회공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봉사단 운영(연 2팀)</li> <li>- 사회공헌 교과목 운영</li> <li>-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멘토링) 운영</li> <li>- 사회복지관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봉사단 운영(연 4팀) <b>확대</b></li> <li>- 사회공헌 교과목 운영</li> <li>-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멘토링) 운영</li> <li>- 지역복지센터 운영 <b>확대</b></li> <li>- KOICA 연계사업 등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발굴 <b>신규</b></li> <li>- 교수·직원·동문 참여 봉사단 운영 <b>신규</b></li> </ul>

※ 확대 및 신규 업무는 향후 업무 조정 및 인력 현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

- 기존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sup>3)</sup>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산하 시설로는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배봉어린이집, ▶마루아라지역아동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신설) 내 지역복지센터로 이관·흡수됨.
- 동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ESG,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up>4)</sup>와 같이 최근 강조되는 사회공헌 활동 영역 발굴에 적극 대처하는 등 총괄적·종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자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다만 기존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지역복지센터로 모두 이관<sup>5)</sup>되는바, 해당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아동센터와 같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조직 개편에 따른 행

3)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3조(사업의 종류) 사회복지관의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2. 어린이집 수탁 운영
3. 지역아동센터 운영
4. 사회공헌 활성화
5.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사회복지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QS 세계대학랭킹은 캠퍼스 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순위(Sustainability Ranking)를 도입하여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지배구조(Governance) 등 3가지 범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의 2024년 QS 지속가능성 순위는 821~840위권임. 이외에 the 세계대학랭킹(The World University Rankings)은 2019년부터 대학 영향력 랭킹(Impact Rankings)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역량을 평가함.

5) 서울시는 산하 시설의 운영 및 종사자의 근로형태는 변동이 없고, 사회복지관의 운영 업무를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서 전담·지원하게 되어 산하 시설의 운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정상의 혼선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아울러 신설되는 글로벌서울사회공헌부단장(교수 겸보)과 지역복지센터장(사회복지학과 교수 겸보)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마련하여, 권한 및 지휘·감독 등 조직 체계상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sup>6)</sup>.

## (2) 국제교육원 폐지(안 제7조제1항제9호 삭제) 및 국제처 신설(규칙 사항)

-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자체 수입재원의 다각화와 대학의 국제화 역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을 폐지하고(안 제7조제1항제9호 삭제, 조례 개정 사항), 대학본부 내에 국제처를 신설함.
- 대학본부 내 국제처 신설에 관한 사항은 규칙<sup>7)</sup> 개정사항으로,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고자 기존 국제교육원의 1과 3센터 체제(국제교류과, 외국인학생지원센터·한국학교육센터·국제교류센터)를 국제처 내 1과 1센터(국제교류과, 한국어교육센터)로 정비함.

---

6)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시설(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운영 업무는 ‘지역복지센터장’이 공헌단장을 보좌하여 기존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공헌부단장’이 지역복지센터 외의 업무에서 단장을 보좌하여 수행할 계획임.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621호, 2024. 1. 22. 개정·시행) 제28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행정처를 둔다.

### < 국제교육원 폐지 및 국제처 신설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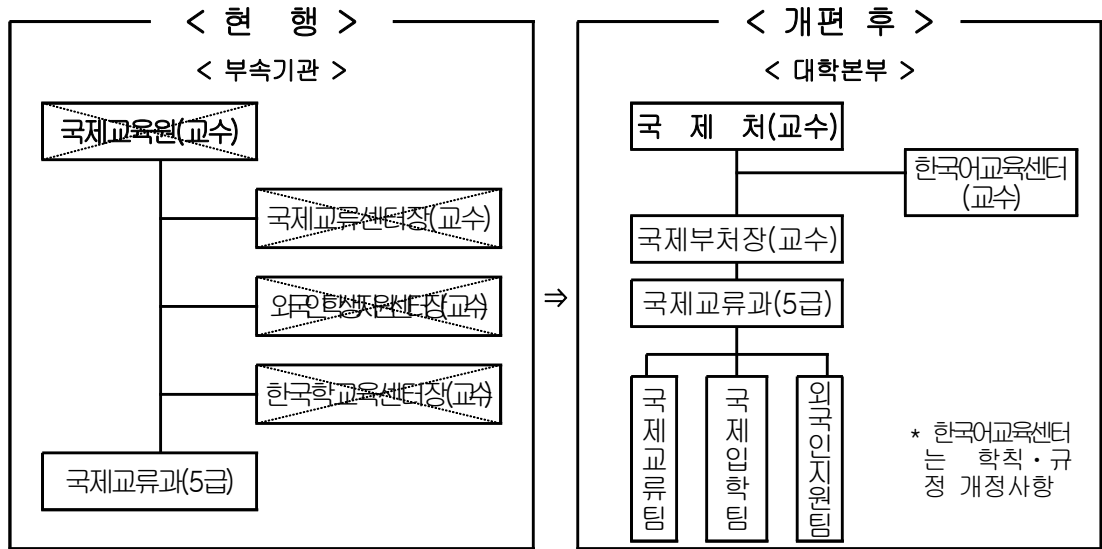


- 국제교류과는 전문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해 3개의 팀 조직으로 개편되어 팀별 업무 추진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한국학교육센터의 명칭은 한국어교육센터로 변경하여 종전 한국어학당의 기능을 수행함.

### < (신설) 국제처 조직별 기능 및 역할 >

구 분	내 용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학당 관련 연수생 홍보 전략, 연수생 입학 전형, 연수생 체류 관리, 예산편성 및 회계, 수업 및 교원 관리 등
국 제 교 류 팀	국제화 전략 수립, 국제교류 협력 지원, 교환학생 유치 및 파견, 외국인 학생 대상 유료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국 제 입 학 팀	외국인 입학 홍보, 외국인 입시전형 결과분석, 외국인 학부 입시전형, 외국인 대학원 입시전형 한국어학당 입시전형 등
외 국 인 지 원 팀	유학생 원스톱 서비스, 유학생 동문, 취업·상담 지원, 외국인 교원 출입국 지원, 외국인 교원 생활 지원 등

- 또한 국제처에는 처장을 보좌하고, 부서 업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부처장 보직을 신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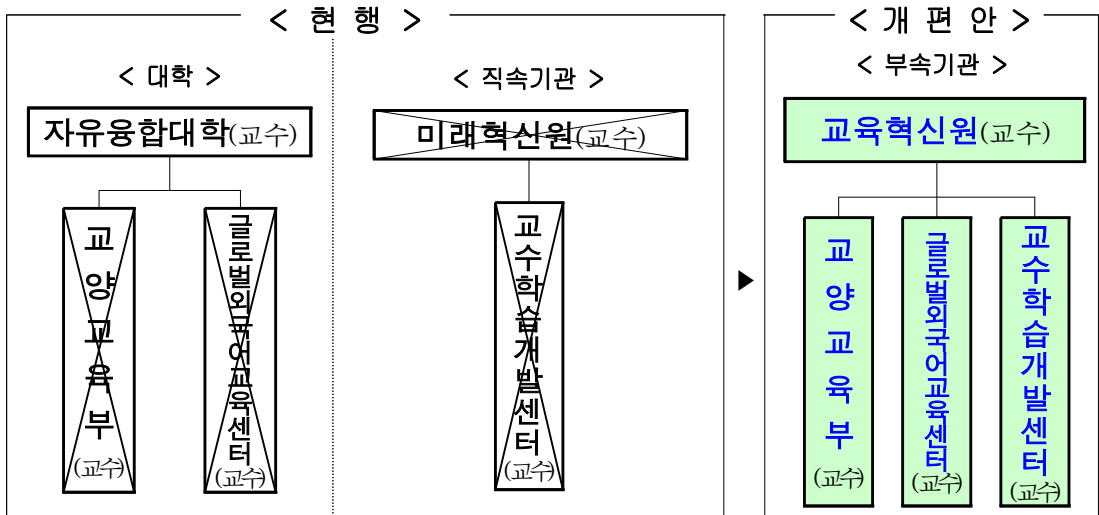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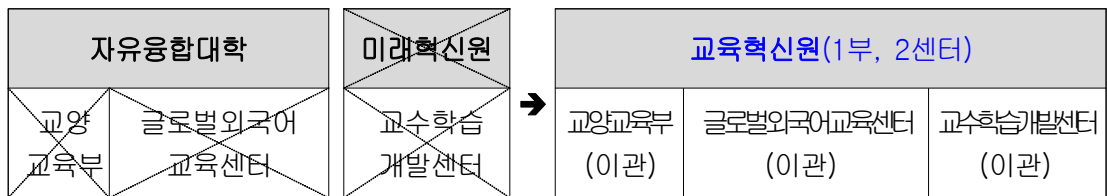


- 부속기관인 기존 국제교육원의 조직 체계는 각 기능 및 역할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제화 업무의 강력한 추진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발굴 및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동 개편 내용은 대학본부 내 국제처 신설 및 팀 체제 확립 등의 준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국제화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편 방향이라 사료됨.
- 다만 조직·정원 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대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무원 정원 감축·동결 기조에 따라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인바, 국제교류과의 팀제 운용 도입에 따른 개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팀장급 직원의 충원 등 필요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용이 요구됨.

### (3) 교육혁신원 신설(안 제7조제1항제9호)

- 동 개정조례안은 교양교육·교원학습·외국어교육 분야의 교육혁신전략 마련 및 실행을 위하여 부속기관으로 교육혁신원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9호 추가, 조례 개정 사항).
- 이를 위해 자유융합대학의 교양교육부·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와 직속기관인 미래혁신원의 교수학습개발센터를 통합·이관하면서(학칙 및 규정 개정사항)<sup>8)</sup>, 교육혁신원은 1부 2센터의 체제로 구성됨<sup>9)</sup>.

#### < 교육혁신원 신설 내용 >



8)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17조의3, 제26조의10,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미래혁신원 규정」 등.

9) 다른 주요 대학은 교양교육 전담부서를 서울시립대와 같이 대학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기구로 편제함. 서울대(기초교육원), 부산대(교양교육원), 경북대(교육혁신본부), 고려대(교양교육원), 연세대(학부교육원) 등. ※ 다른 주요 대학의 조직 비교는 [붙임] 자료 참고.

- 교육혁신원의 1부 2센터 체제에 따라 교양교육부는 교양 교과목 교육 과정을 총괄하고,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는 외국어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게 됨.

< (신설) 교육혁신원 조직별 주요 업무 내용 >

부속기관	구 성	주 요 업 무
교육혁신원 (1부, 2센터)	교양교육부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총괄 운영·지원, 학사행정 등
	글로벌외국어 교육센터	2외국어 교과목 연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교과·비교과 연계 체계 확립 등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 기획, 운영 관리 등

- 신설되는 교육혁신원은 각 부서에 산재된 교육혁신, 교양교육 및 외국어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지원 및 강화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편 방향으로 사료됨.

(4) 미래혁신원 및 기획처 통폐합(안 제7조의2 및 규칙 사항)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대에 산재된 기획·평가·대학혁신·성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발전기금 확충·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주 등 대외협력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미래혁신원을 폐지하고(안 제7조의2, 조례 개정 사항), 기획처를 확대·개편(규칙·학칙 개정 사항)하여 통합함.
- 직속기관인 미래혁신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sup>10)</sup>의 추진동력을 확

10)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ACE+ (자율역량강화),

보하고자 2020년<sup>11)</sup>에 설치되어 대학혁신, 대학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나 기획조정 및 대외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편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이 기획처, 교육혁신원(신설), 학생처로 각각 이관됨.

○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래혁신원(대학혁신과)의 대학혁신지원, 대학평가, 성과관리 업무는 기획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처(기획과)로 이관되면서 기획과는 기존 3팀에서 4팀으로 확대·개편됨<sup>12)</sup>.
- 또한 기획처에는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과(4·5급)를 신설하여 2과 체제로 확대·개편하고, 대외협력과에 3개 팀을 편제하여 기획과의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와 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사업단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sup>13)</sup>.
- 미래혁신원 산하 센터의 기능도 조정됨에 따라 IR센터는 기획처장의 직속 기구로 이관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육혁신 전략마련을 위해 교육혁신원(신설)으로 통합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

CK (특성화), CORE (인문), WE-UP (여성공학), PRIME(산업연계) 사업이 하나의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된 국가재정지원 사업

11)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21호, 2019. 12. 31.개정, 2020. 1. 1. 시행) 제7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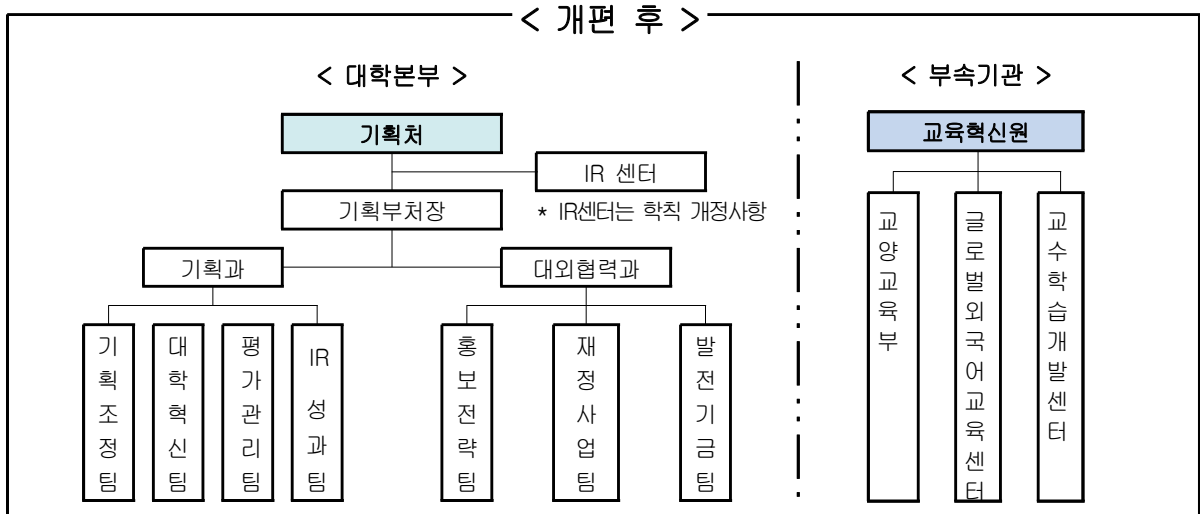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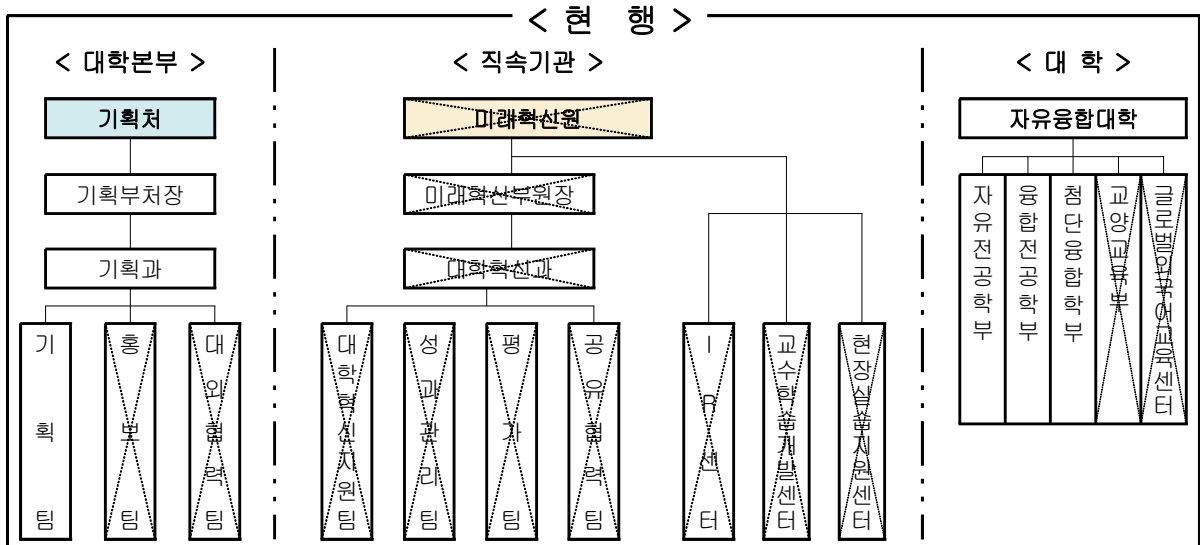
12) 기존 3팀: 기획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개편 4팀: 기획조정팀, 대학혁신팀, 평가관리팀, IR성과팀.

13) 기획처 대외협력과 3팀: 홍보전략팀, 재정사업팀, 발전기금팀.

학생처에 신설되는 인재개발실 소속으로 이관함.

< 미래혁신원 및 기획처 통폐합 내용 >

기획처(1과)	미래혁신원(1과, 3센터)		기획처(2과, 1센터)		
기획과(3팀)	대학혁신과(4팀)	IR 센터	기획과(4팀)	대외협력과(3팀)	IR 센터
기획팀	혁신지원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기획조정팀(명칭변경)	홍보전략팀(이관)	
홍보팀,	성과관리팀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혁신팀(이관)	재정사업팀(신설) (← 舊 미래혁신원 공유협력팀)	
대외협력팀	평가팀		평가관리팀(이관)	발전기금팀(이관)	
	공유협력팀		성과관리팀(이관)		



- 미래혁신원과 기획처의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은 대학 수입 재원의 다각화, 기획 조정 기능 일원화 등 대학발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체제 정비로써 대학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기획처가 기획 조정 기능 및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이유로 2과 체제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기획 조정 및 대외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만큼 대내외 간 유기적인 업무 추진 및 원활한 협력 관계 형성에 있어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로 개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할 것임.
- 한편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교육부고시<sup>14)</sup>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그 소속을 미래혁신원 산하 센터로 운영<sup>15)</sup>하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미래혁신원 소속’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학칙·규정의 개정 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5) 그 밖의 조직 개편 사항(규칙 등 개정 사항)

1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1.1.개정·시행) 제9조 (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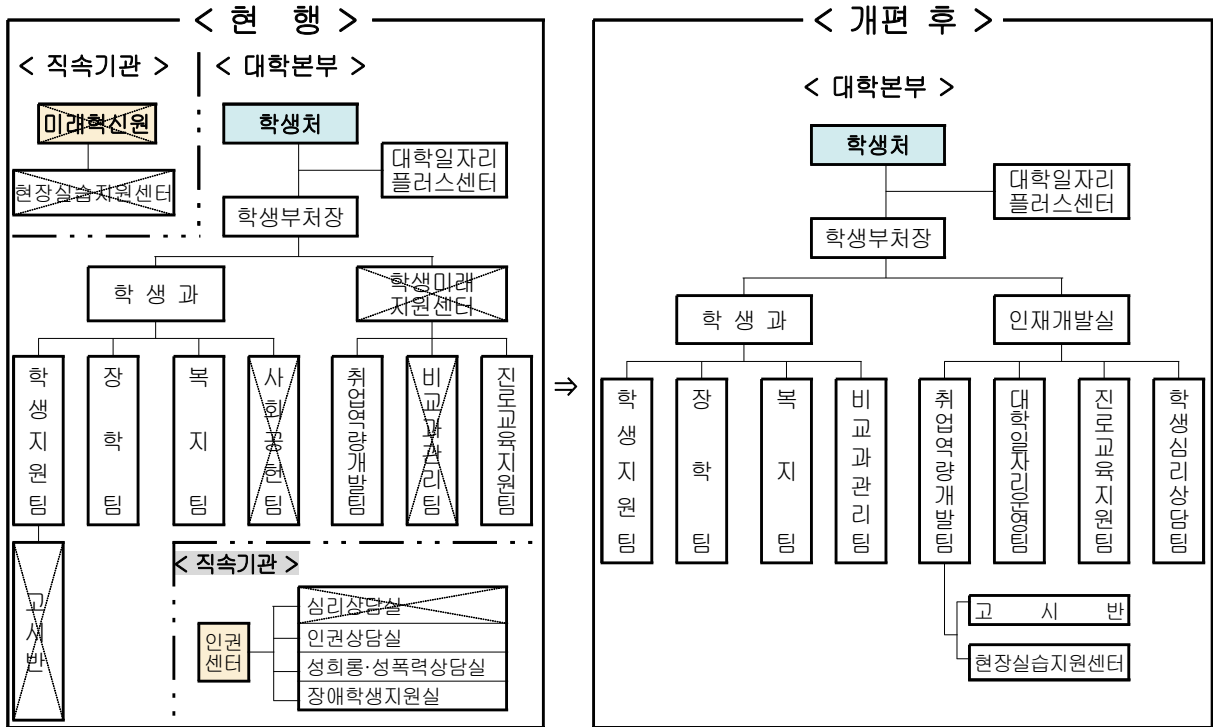
15) ‘서울시립대학교 현장실습 개선 종합 계획’(총장 방침 제385호, 미래혁신원-2521, 2020. 5. 18.)



- 서울시립대의 조직 개편안은 조례 개정 사항 외에 규칙 및 학칙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생처는 심리 상담 및 취업진로 상담을 통합 운영하고, 현장실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미래인재 개발·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확대·개편함.
  - 학생처(학생과)의 사회공헌팀은 사회공헌활동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부속기관)으로 이관함.
  - 학생미래지원센터는 학생처의 학칙상 기구를 개편하여 폐지하고, 인재개발실을 신설하여 학생의 진로·취업·현장실습 지원·학생심리상담 등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함.

< 학생처 확대·개편 내용 >

학생처(1과, 2센터)			학생처(1과, 1실, 2센터)		
학생과 (4팀)	<del>학생미래지원센터 (3팀)</del>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학생과 (4팀)	인재개발실 (4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학생지원팀	취업역량개발팀		학생지원팀	취업역량개발팀	
↳ 고시반				↳ 고시반(0관)    ↳ 현장실습지원센터(0관)	
장학팀	비교과관리팀		장학팀	대학일자리운영팀(신설)	
복지팀	진로교육지원팀		복지팀	진로교육지원팀	
<del>사회공헌팀</del>			비교과관리팀(0관)	학생심리상담팀(이관, 명칭 변경)	
<del>미래혁신원</del>	<del>인권센터</del>				
<del>현장실습지원센터</del>	<del>심리상담실</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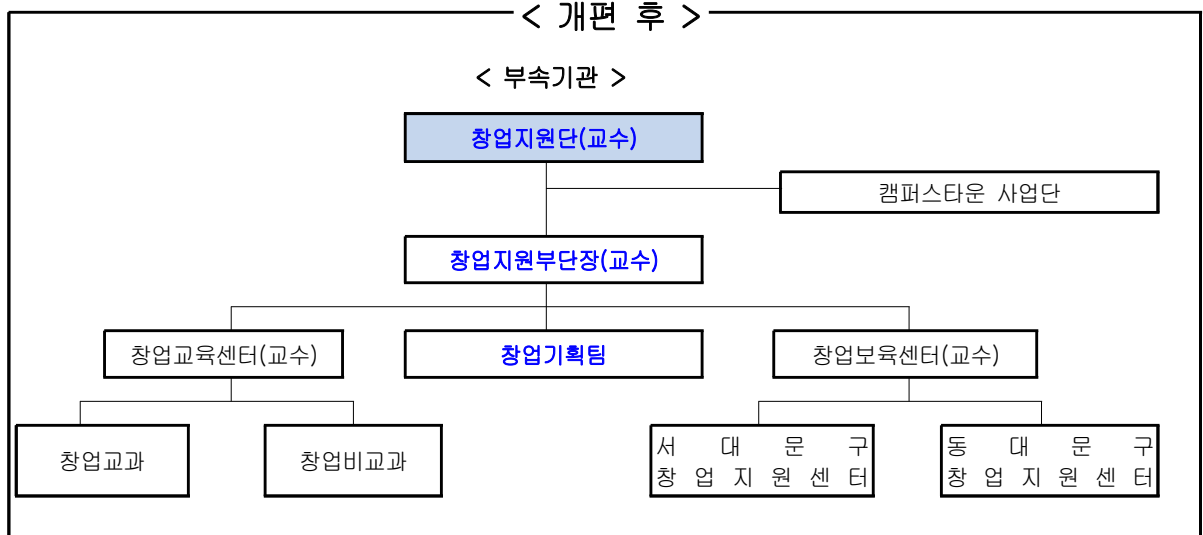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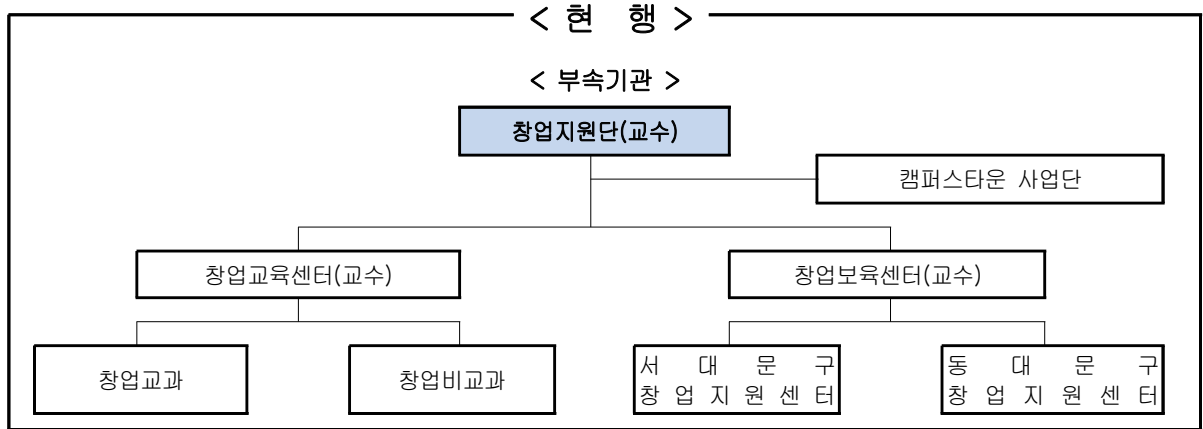


- 부속기관인 창업지원단은 서울시립대에 대한 대학평가 결과<sup>16)</sup>, 창업 분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 경쟁력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부단장 보직을 신설하고 창업기획팀을 추가함<sup>17)</sup>(규칙 개정 사항).

16) 최근 3년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창업 관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학생 창업 지원 부분의 시립대 순위는 전체적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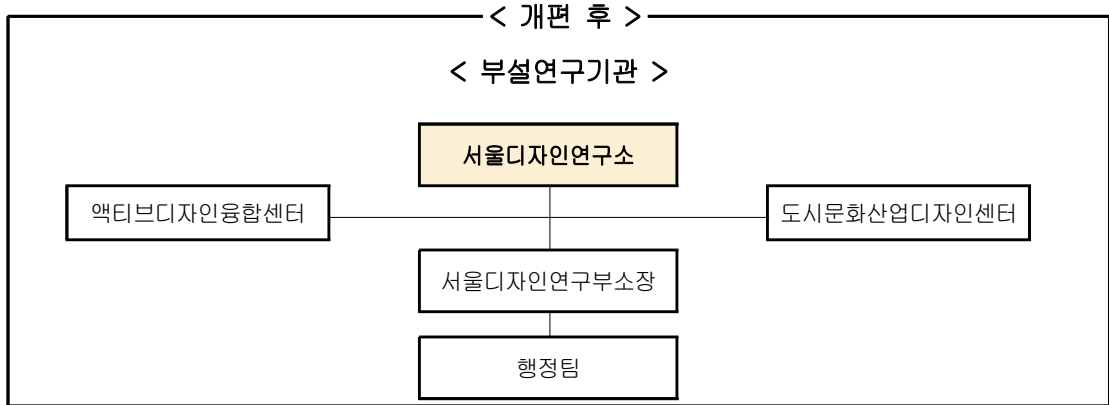
지표명	순 위			비고
	2023	2022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9위	11위	11위	총 46개교 참여
학생창업 지원 및 성과순위	지원:25위 성과:21위	22위	26위	
지원	재학생당 창업전담인력	10위	5위	6위
	재학생당 창업지원금	26위	25위	25위
	창업교육 비율	30위	28위	26위
성과	재학생 기업 수	42위	42위	27위
	기업당 매출액	14위	22위	27위
	기업당 고용인원	13위	13위	41위

17) 그 밖에 당초 서울시립대의 조직 개편안은 창업지원단의 명칭을 '창업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명칭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타 대학과의 혼선(주요 국립·시립 대학은 창업지원단으로 명칭 통일)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됨.



- 특히 재학생당 창업전담인력 · 창업지원금과 창업교육 비율 등 학생창업 지원 분야의 순위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순위도 중위권 수준에 불과한바('23년 지원 25위, 성과 21위), 부단장 및 팀 신설과는 별개로 기존 창업지원 업무에 대한 재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학칙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개발 지원 및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디자인연구소(부설

연구기관)를 신설할 계획임(1팀 2센터, 연구소장·부소장·센터장은 교내 전임교원 겸보).



## 라. 종합 의견

- 동 조직 개편안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기구의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음.
- 특히 이번 조직 개편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정원 증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및 조직 효율화를 통해 대학 발전계획의 실행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조직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기구의 특성 및 체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충원이 필요하며, 조직진단 및 업무 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력 충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학칙 및 규정 내용상 상위 법령과 조례상 규정이 정확하게 인용되지 않는 사례<sup>18)</sup>가 발견되는 만큼 학칙·규정 등 자체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8) 일례로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육원 규정」 제1조(목적)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독 및 승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9조(부설연구소)를 인용하고 있으나 국제교육원 규정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7조(국제교육원)임.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0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대학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기존 사회복지관 업무를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서 수행

나. 국제교육원 폐지(안 제7조제1항제9호 삭제) 후 국제처 신설

- 부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을 대학본부 산하 하부조직인 국제처로 확대개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국제처

다. 교육혁신원 신설(안 제7조제1항제9호)

- 기존 자유융합대학, 미래혁신원에서 수행하던 교양교육, 글로벌외국어교육, 교수학습개발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라. 미래혁신원(안 제7조의2) 폐지 후 관련 업무 기획처로 이관

- 대학의 기획·평가·대학혁신·성과관리 기능 일원화로 대학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강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기획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4. 12. ~ 5. 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지우 (☎2133-673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고등교육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9. 교육혁신원

제7조의2 중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을 “인권센터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학칙) ① 대학교의 장 (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u>고등교육법</u>」 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p>	<p>제2조의2(학칙) ① ----- ----- <u>법 제6조</u>----- ----- ----- ----- ----- ----- -----</p>
<p>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p> <p>1. ~ 4. (생략)</p> <p>5. <u>사회복지관</u></p> <p>6. ~ 8. (생략)</p> <p>9. <u>국제교육원</u></p> <p>10. ~ 1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u> 6. ~ 8. (현행과 같음) 9. <u>교육혁신원</u>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직속기관)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u>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u>을 둔다.</p>	<p>제7조의2(직속기관) ----- ----- <u>인권센터</u>를 ----- ----- -----</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 -----</p>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조직개편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이 없어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서지우(☎ 2133-6739)